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48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이병진·윤후덕·김영호

소병훈 • 이광희 • 김현정

임미애 • 이원택 • 권향엽

주철현 • 박상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, 자녀, 부모,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러나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,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,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 제6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손자녀

제12조제2항 전단 중 "자녀는"을 "자녀 및 손자녀는"으로, "자녀로"를 "자녀 및 손자녀로"로, "자녀가"를 "자녀 및 손자녀가"로, "자녀의"를 "자녀 및 손자녀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가계소비지출액"을 "가계소비지출액와 물가상승률(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을 말한다)"로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"자녀와"를 "자녀 및 손자녀와"로, "그자녀"를 "그 자녀 및 손자녀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자녀에"를 "자녀 및 손자녀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자녀"를 각각 "자녀 및 손자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자녀가"를 "자녀또는 손자녀가"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 중 "자녀"를 "자녀 및 손자녀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자녀,"를 "자녀 및 손자녀,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

3호 중 "자녀"를 각각 "자녀 및 손자녀"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4호 중 "자녀"를 "자녀 및 손자녀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"를 "자녀, 손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"로 한다.

법률 제2068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3조 전단 중 "자녀는"을 "자녀와 손자녀는"으로 한다.

제64조 본문 중 "자녀와"를 "자녀,"로, "중"을 "및 손자녀 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	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
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	
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	
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6. 손자녀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보상금) ① (생 략)	제12조(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	②
에 해당하는 유족 중 <u>자녀는</u> 2	<u>자녀 및 손</u>
5세 미만인 <u>자녀로</u> 한정하되,	<u> 자녀는</u> <u>자녀 및</u>
그 <u>자녀가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 손자녀로자녀</u>
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	<u>및 손자녀가</u>
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	
도 25세 미만인 <u>자녀의</u> 예에	
따라 지급한다. 대통령령으로	자녀 및
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	<u>손자녀의</u>
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	
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「통	4

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 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(告示) 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家口) <u>가계소비지</u> 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 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 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5조의2(부양가족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 족수당을 지급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전몰군경·순직군경·4·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 자의 <u>자녀와</u> 제1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<u>그 자</u> <u>녀</u>. 다만, 보상금을 받는 <u>자녀</u> <u>에</u> 한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

	가계소비지
	출액와 물가상승률(「통계법」
	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
	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
	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을 말한
	다)
	(5) (현행과 같음)
저	15조의2(부양가족수당) ①
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	3
	<u>자녀 및 손자녀와</u>
	<u>그 자녀 및 손자녀</u>
	<u>자녀 및</u>
	<u>손자녀에</u>
	②

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: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- 2.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: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<u>자녀</u>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 공자의 미성년 <u>자녀가</u>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 의 범위에 포함한다.

④ (생 략)

- 제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교육지원 대상자"라 한 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<u>자</u><u>녀</u>
 -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<u>자녀</u>,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,
1
자녀 및 손자녀
2
<u>자녀 및 손자녀</u>
3
자녀 또는 손자녀
가
<u>/ </u>
,
④ (현행과 같음)
∥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 <u>자</u>
<u>녀 및 손자녀</u>
4
<u>자녀 및 손자녀,</u>

0]	사망한	경우의	ユ	미성년
제기	매			

- ② (생략)
-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 다.
- 1. (생략)
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<u>자</u><u>녀</u>
- 3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④ (생 략)

-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저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 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

 ② (현행과 같음)
3
1. (현행과 같음) 2 <u>자</u> <u>녀 및 손자녀</u> 3
 <u>자녀 및 손자</u> <u>녀</u>
④ (현행과 같음)
ll 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 4

별공로순직자의 자녀

- 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- ② · ③ (생 략) 법률 제2068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63조(양로지원) 국가유공자나
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
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
세 이상의 여성(전상군경, 공상
군경, 4・19혁명부상자, 공상공
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
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
이상을 말한다) 중 부양의무자
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
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
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
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
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

<u>자녀 및 손자</u>
녀
5
<u>자녀, 손자녀 및</u>
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와
<u>손자녀</u>
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684호 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_ , , • , ,
제63조(양로지원)
<u>자녀와 손자녀는</u>

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 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제64조(양육지원) 국가유공자의 저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(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) 또는 부양의무자 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 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양 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•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 · 대학 또는 이 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 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.

제64조(양육지원)
<u></u> 자녀,
<u>및 손자녀 중</u>